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협회는 이번 전문강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문을 토대로 하반기에 실시할 2차 RI/방사선 전문강좌는 1차 강좌와의 연속성을 추구하되, 현행의 다양한 과목 중 수강생들이 꼭 듣고 싶어 하는 강좌를 엄선, 실무

위주의 실습을 보강한 강좌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과 달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과목만을 선별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일별 교육 수강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유관기관 동정

### 과학기술부

####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전국 7개 권역 13개 연구소에 6년간 240억원 지원 -

과학기술부(부총리겸 장관 오명)는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전국 7개 권역 13개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BAERI : Basic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 올해부터 6년간 240억원(연간 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이들 연구소는 원자력발전 안전관련 연구분야 5개소,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연구 분야 5개소,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연구 분야 3개소이다. 이들 연구소들은 원자력 및 방사선과 IT·BT·N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연구를 전공분야가 다른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협동연구를 통해 추진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방사선 신호전달 및 텔

로미어(telomere)길이 조절에 의한 장수기전 연구(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길홍 교수)'는 "저선량 방사선은 장수(長壽)와 관련 있다"는 "방사선 호메시스(Radiation hormesis)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향후 그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동 사업은 2002년부터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5년도, 200억원)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금년 5월, 6개의 신규 연구소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전국적인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앞으로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미나 개최, 연구개발 정보교환,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IAEA 환경동위원소 측정센터' 제주대에 유치

- 아태지역 수자원보호·환경오염 방지에 기여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환경동위원소 측정센터가 제주대에 설치된다.

과학기술부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수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환경동위원소 측정센터를 IAEA로부터 유치, 7일 제주대에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환경동위원소란 자연에 포함된 안정적인 천연 동위원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질중에서 이들 동위원소의 함량을 측정, 해당 물질의 발생기원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이 센터는 안정 동위원소를 이용, 미래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의 오염기원과 자원분포 등을 측정·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교육·훈

련을 통해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부는 이 센터의 설비투자 비용으로 15억원을 지원하고 IAEA는 연간 약 1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센터가 제주대에 설치됨에 따라 아·태지역 개도국 및 저개발 국가들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데 우리의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잘 개발된 지하수 관정을 갖고 있는 데다 지하수 순환특성 및 오염에 관한 좋은 연구조건을 갖췄으며 그동안 제주대 부설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소장 박재우)를 중심으로 IAEA와의 공동연구 수행 등 동위원소를 이용

한 많은 기술개발경험을 축적해 이번 IAEA 환경동위원소 측정센터를 유치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센터 유치는 우리나라의 환경동위원소 측정기술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지하수 연구는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돼 지금은 그 연구 영역이 더욱 넓어져 지구과학 연구분야에서 지구환경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5. 6. 6-

## 제1회 원자력안전 포럼 개최

과기부는 국민 스스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원자력안전 포럼을 개최한다.

‘방사선을 알고 원자력안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홍성운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 등 5명의 주제발표와 황수관 연세대 의과대

교수의 특별강연, 그룹별 자유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앞으로 원자력안전 포럼을 꾸준히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에서도 ‘원자력안전 열린마당’을 개설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 2005. 6. 30-

## 최석식 과기부차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 선정절차 및 방법 발표문

과기부는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2002년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2002년 7월부터 10년간 약 1,300억원의 연구개발사업비를 투입하여 100MeV의 선형 양성자가속기를 개발·설치함으로써 원자력 핵심기술개발과 함께 NT, BT, IT, RT 및 의료분야 등 국가의 중요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양성자가속기 설치·운영을 위한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차질없는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고의 주요내용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의 선정 절차 및 유치 기본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로 선정·통지 받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과 협의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 처분시설 최종 후보부지로 통지가 있는 후 2개

월 이내에 당해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대학(국·공립 및 사립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유치기관을 통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지원 협약서와 참여기관의 현금/현물 출자확약서(해당기관) 등 관련서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에 필요한 기본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가. 유치기관은 유치 기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

소 10만평 이상의 부지, 연구동, 관리동, 숙소 등 연구지원시설, 전력 및 용수 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부지나 부대시설, 그리고 연구 지원시설 등의 유치 기본요건과 제출서식 등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komac.re.kr)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가 차질없이 선정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되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16. 과학기술부 차관 최석식

## 산업자원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444호,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후보부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1. 후보부지 선정 방식

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부지는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 등의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법률 제7124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부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2. 부지적합성 평가

(가) 위원회는 과학기술부 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제2005-16호)”에 근거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예상부지”라 한다)의 부지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예상부지에 대한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는 예상부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여건을 심사·평가한다. 사업추진여건의 평가는 상기(가)항의 안전성 이외의 부지조건과 자연 및 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위원회는 상기(가)항과 (나)항의 평가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예상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 3. 주민투표의 실시

(가)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에 예상부지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5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

부장관에게 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위원회는 상기 (가)항에 의한 신청지역이 2개 이하일 경우,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하여 주민 투표 실시 요구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동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지역(예상부지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지역 선정 방식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기 (가)항과 (나)항의 지역 중에서 상기 2항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부지 적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통지받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05년 9월 15일 까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 시점까지 상기 2항의 부지적합성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철회한다.
- (라) 상기 (다)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지역이 복수인 경우 주민투표는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민투표의 실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4. 후보부지 선정 등

- (가) 상기 3항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주민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기 (가)항의 통지를 받은 후 상기 2항에 의한 부지적합성이 인정되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예상부지를 후보부지로 선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지한다.

-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기 (나)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부지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7016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 5. 시설의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상기 4-(다)항에 의해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등에 지원하도록 한다.
-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시설에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한다.
- (다) 사업자는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 본사의 이전을 완료한다.
-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유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확정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05. 6. 16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명,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한갑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중계